

의안번호	제929호
의결 연월일	2025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오영탁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5년 4월 11일

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(오영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2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5년 4월 11일

발 의 자 : 오영탁, 최정훈, 안지윤,
김국기, 박재주, 안치영,
조성태

1. 제안이유

- 충북도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충청북도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명예도민으로 예우하고 있는바, 수여 대상과 예우를 명확히 하여 충청북도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명을 “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”에서 “충청북도 명예도민 예우 조례”로 함.
- 도 위상 제고, 도민 생활개선 및 국제교류 공로 등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을 규정함(안 제2조).
-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자 추천 및 결정 절차를 규정함(안 제3조 및 제4조).
- 도 주최 행사 초청, 주차요금·입장료 면제 등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를 명확히 규정함(안 제6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 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관련 부서 : 행정국 행정운영과
- 다. 예산 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첨부
- 라. 조례안예고 : 예고대상(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)

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충청북도 명예도민 예우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명예도민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충청북도민(이하 “도민”이라 한다)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(이하 “명예도민증서”라 한다)를 수여할 수 있다.

1.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의 위상을 높인 사람
2. 도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
3. 외국과의 상호결연, 우호관계 증진 등 국제교류에 공로가 있는 사람
4. 인재양성,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여 도민 화합에 이바지한 사람
5. 충청북도 소재 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전임하는 사람으로서 도, 시·군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
6. 그 밖에 도지사가 명예도민증서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3조(대상자 추천) ① 도의 실장·국장·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, 충청북도

의회의장 및 시장·군수는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자(이하 “대상자”라 한다)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(대상자 결정) 도지사는 「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」에 따른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.

제5조(명예도민증서 수여)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결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는 경우에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한 경우에 그 결과를 충청북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도민증서와 기념품의 제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6조(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장 작성 및 자료 보존) ①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추천, 제4조에 따른 대상자 결정 및 제5조에 따른 명예도민증서 수여에 관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.

제7조(명예도민에 대한 예우) 도지사는 명예도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.

1. 도 주최 행사 초청, 도 발행 소식지 제공, 도 주최 강연 강사 초빙 및 공적 홍보

2. 「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」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

3. 「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」 제4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입장료 면제

4. 「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」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설사용료 감면

5. 그 밖에 도지사가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 (명예도민증서 수여 취소) ① 도지사는 명예도민이 명예도민증서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「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」에 따른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명예도민증서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 명예도민증서 수여 취소 결정 전까지 그 사실을 충청북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명예도민증서 수여가 취소된 경우 제7조에 따른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도 소멸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 중 “「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 명예도민 예우 조례」”로 한다.

②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2항 중 “「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 명예도민 예우 조례」”로 한다.

③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4호 중 “「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 명예도민 예우 조례」”로 한다.

④ 충청북도명예도지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「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 명예도민 예우 조례」”로 한다.

충청북도 명예도민 추천서(제3조제2항 관련)

추천받는 사람	성명(한글)	성명(영문)	사진 (40mm × 30mm)
	생년월일	출생지	
	주소		
	직장명 · 직위/직급		
	연락처 (휴대전화번호)	연락처 (E-mail)	
	(외국인의 경우) 외국인등록번호	사용언어	한국어 구사 정도 상 중 하
추천하는 사람	성명	생년월일	
	연락처 (휴대전화번호)	연락처 (E-mail)	
	직장명 · 직위/직급	담당자 성명·연락처	
	추천받는 사람 주요 경력 (별지 작성 가능)		
	추천받는 사람 주요 공적 (별지 작성 가능)		

위 사람을 충청북도 명예도민으로 추천합니다.

년 월 일

추천인 ○ ○ ○ (서명 또는 인)

충청북도지사 귀하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제1호

○ 사 유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과 예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별도의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